

과업지시서

1. 과업개요

가. 과업명: 언약의 교회 지붕 보수·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

나. 과업위치: 언약의 교회

다. 과업기간: 착수일일로부터 29일

라. 과업내용

1) 1층 예배당 정보통신 공사

가) LED디스플레이(상하 이동 가능) 설치

나) 무대 핀조명 및 스피커 이동

다) LED 디스플레이, 핀조명, 음향 등 재설치에 따른 조정 시스템 신규 설치

라) 팬던트 조명 및 매립등 교체 설치

마) 기타 정보통신 기기 철거 및 재설치

예배당 현황



2. 용어의 정의

가. “공사”란 건설(토목·건축·설비·조경·환경시설 및 기계설비 등)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등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·유지·보수 및 해체 등을 말한다.

나. “용역”이란 재물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나 노력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.

다. “경미한 공사”란 계약금액 1,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말하며, 시설물의 구조적 형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여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.(예: 환경 개선, 칸막이 신설, 바닥재 전면 교체, 전기회로 증설 등)

라. “수리 및 수선(유지관리)”란 기존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·정비하고, 손상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기능 회복에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는 일상적인 행위를 말한다.(예: 바닥재 보수, 벽체 보수, 배선기구 교체, 감지기 교체, 냉난방기 세척 및 수리, 설비 부속 교체 등)

3. 특약사항

- 가.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, 해당 공사의 기능 및 목적을 당설하기 위해 구조상·외관상·기능상 당연히 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며, 이는 본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현장 확인을 통해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여야 하며, 이후 발견되는 누락이나 현장 상이 사항에 대한 모든 리스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.
- 다. 본 공사는 최저가 총액계약으로서,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공내역서의 물량 누락, 오류 또는 현장 여건과의 상이함을 이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.(최저가 입찰)

4. 계약

- 가.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 청구서, 각서, 승낙사항 등 계약의 성립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.
- 나. 내역서는 육안점검을 통하여 안목치수로 산출하여야 한다.(도면산출 인정 불가)
- 다. 계약상대자는 내역(물품, 단가, 수량, 준공일 등) 변경 시 지체없이 공사관리자에게 보고 및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라. 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산정하여야 한다.
- 마. 계약상대자는 내역 변경 요청 시 변경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바. 공사관리자는 과업내역 변경 접수 후 변경계약을 계약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.

5. 착수

- 가.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, 발주자가 요청하는 착수서류(착공체 크리스트 등)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경미한 공사 및 용역은 착공서류를 생략할 수 있고, 생략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.
- 나. 경미한 공사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고,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. 고용보험 가입기준

구분	가입 기준
건설업자 시공	모든 건설공사(금액 무관 의무 가입)
비건설업자 시공	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

6. 준공

- 가.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, 발주자가 요청하는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경미한 공사 및 용역은 준공서류를 생략할 수 있고, 생략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.
- 나. 경미한공사 및 용역은 거래명세서 및 사진대장 제출로 준공을 갈음할 수 있다.
- 다. 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한 사항만 인정되며, 용품 반입 등 발주자의 필수 확인 되어야한다.

7. 일반 및 보안 조건

- 가.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, 관계법령,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- 나.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대학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.
- 다.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,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.
- 라.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학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- 마.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보안책임이 있으며,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바.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.
- 사.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.